

2015년
교회재정세미나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

일시_2015년 11월 5일(목) 오후 2시~4시

장소_한국기독교교회관 에이레네홀

주최_교회재정건강성운동(www.cfan.or.kr)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 행사 순서

□ 사회: 조제호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 14:00 ~ 14:10 취지 안내

· 14:10 ~ 14:40 발제1 성직인 목사의 노동과 그 대가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 14:40 ~ 15:10 발제2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

최호운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15:10 ~ 15:30 교회 사례 조사 발표

조기성 국장(기독교경영연구원)

· 15:30 ~ 16:00 질의 및 응답

■ 목 차

· 취지 4쪽

· 발제1 5쪽

성직인 목사의 노동과 그 대가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 발제2 15쪽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 최호윤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교회 사례 조사 발표 20쪽

조기성 국장 (기독교경영연구원)

· 단체 소개 29쪽

■ 취 지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와 신도들의 갈등 때문인데 이중 많은 경우가 ‘돈’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의 경우, 목회자 사례와 목회활동비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신도들의 이견이 첨예하여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매해 많은 교회가 분쟁을 통해 상호간에 상처를 주고받다가 결국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또한, 대형교회들은 목회자 사례뿐만 아니라 목회활동비를 자유롭게 책정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의 사례는 이와 함께 쌈짓돈으로 전락한 목회활동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유명 대형교회의 경우,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씬씀이를 보여주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사례와 목회활동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목회자의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사례의 기준을 제시하고 목회활동에 대한 지원비의 기준 또한 명확하게 마련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목회자 사례와 목회활동비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실제적인 근거를 함께 들고 교회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구성원의 인도자로서,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영적 지도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는 ‘돈’에 관한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것은 교회와 사회가 바라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더 이상 교회와 목회자가 ‘돈’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착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목회자의 사례와 목회활동비의 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고민하고, 함께 그 기준을 세우려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교회 재정을 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민도 나누고 질문도 던져주고 함께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발 제 1

성직인 목사의 노동과 그 대가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1. 들어가는 말

목사는 목사로서의 됨됨이 즉 ‘존재(됨, being)’와 목사의 직무로서 ‘해야 할 일(함, doing)’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목사직은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성직이다. 왜냐하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영혼구령을 위한 특별한 사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 소명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지고의 초월적인 정신적 영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목사가 되는 과정에 교육, 결혼과 가정생활, 자녀교육, 그리고 목회에 전념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활동, 즉 정신과 육체의 노동이 뒷받침 되어야 성직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런데 부차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만일 이러한 것들이 너무 과도하거나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최근 한국 교단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목회자의 생활비’나 ‘이중직’에 관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점과 연관이 된다. 목사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감당하여야 할 성직과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사회 경제적 토대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선 전통적인 성직의 개념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순수하게 영혼구령에 전념하여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물질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목회자사례비에 대한 문제나 반대로 성직에 전념하지 못하고 생활을 위한 직업을 고려하여야 하는 생계의 문제는 목회자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직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서구의 경우에는 성직 자체가 공직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미국 연합감리교회처럼 최저생계비 제도가 정착되어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제 물질적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 성직의 수행과 생활을 위한 직업선택의 사이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필자는 본 글에서 위의 사안을 염두에 두고 세 가지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목사의 직무가 세속적 직업인지 아니면 고유의 성직인가에 관하여 성경의 ‘노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노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둘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 고린도에서는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목사직의 물질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으로서의 성직에 관하여 목회패러다임에 대하여 몇 가지 점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2. 노동의 성경적 근거

성직이라는 특수 직무나 근대화 이후 분업화의 과정을 통하여 생긴 다양한 직업이 생기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성경은 노동의 신성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간이 땅에서 노동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대로 지으신 인간을 땅에서 일하게 하셨다(창2:5-7). 노동이 고생스럽고 힘든 이유는 본래 하나님과의 신뢰와 일치 관계를 깬 인간의 죄 때문에 힘든 것이 되었다(창3:6-8).
- (2)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은 적어도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한 조건이므로 명예로운 것이며 원칙적으로 빈곤을 막는 효과적인 도구이다(잠10:4).
- (3) 예수님께서도 노동을 하시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순종하며, 노동을 하시었다(막6:3; 눅2:51).
- (4)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처럼 자신의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노동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달란트대로 일하지 아니하는 종을 책망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을 칭찬하신다(마25:14-30; 24:46).
- (5) 예수님의 사명 또한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명 또한 일하는 것임을 밝히셨다(요5:17).
- (6) 노동 대가의 당위성: 노동한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눅10:7).
- (7) 그리스도인은 노동을 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은 일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며 살 권리가 없다(살후3:6-12).
- (8) 노동의 열매로서 나눔의 연대성 실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신세지는 일 없이”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곤궁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연대성을 실천해야 한다(살전4:12; 엡4:28).
- (9) 노동과 일 자체는 삶의 목적이 아니다. 인간은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 인간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막8:36).
- (10)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갖가지 일을 걱정하며, 마음을 씌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우(愚)를 범하면 안 된다(마6:25, 31, 33, 34).
- (11) 노동의 올바른 지향점: 노동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지향할 때에만 올바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눅10:40-42).
- (12)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봉사로서의 인간의 노동: 인간의 노동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봉사가 된다(엡3:8).
- (13) 노동과 휴식: 인간은 노동의 숙명에 묶여있기는 하지만, 휴식은 더 충만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히4:9-10).
- (14) 휴식의 당위성: 하나님께서도 쉬셨다(창2:2).
- (15) 재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화를 “일구고 돌보아야” 한다(창2:15).
- (17) 피조물을 인간이 사용할 권리와 의무: 창조주의 계획대로 창조된 실제들은 그 자체로 선하며 인간이 사용하도록 존재한다(시8, 5-7).

3. 성경적 노동의 특징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자유로부터 기인한 행위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것이다. 노동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자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포함된 행위였다. 하나님의 노동과 인간의 노동과 차이점은 하나님의 노동은 전적 자유에 근거하지만 인간의 노동은 하여야 할 일이 정하여져있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과 연관이 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1:29).” 하나님은 인간에게 해야 할 일을 주었기에 노동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였다.

둘째, 노동에는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9).”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창조하신 후 인간으로 하여금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지정하여 주셨다.

셋째, 노동에는 보상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창 1:30).” 이 보상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다른 피조물에게도 동일하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1:30).”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인간의 노동은 의무이며 명령이고 그리고 축복이다. 에덴동산에 있는 인간은 유유자적 노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복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창2:15).

정리하면 노동은 하나님 형상의 반영이며 귀한 일이다.¹⁾ 본래 일을 한다는 것은 원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분이고(창2:5,15),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출20:11).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창2:5)”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2:15)”의 내용처럼 노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질서이다.

인간이 노동으로 고통당하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은 목적과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일을 통한 기쁨 보다는 고생과 연관되어 버린다.²⁾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인간의 배반으로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 동등한 남녀의 입장이 종속으로 바뀌며, 자연은 순응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노동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바뀐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동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창조질서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희망을 재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일을 통하여 서로의 신앙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간 성실과 정직을 보여주며 주님이 주신 재능을 최대한 선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³⁾

따라서 노동은 신앙을 더욱 깊게 하는 행위이다. 노동은 하나님께 새로운 각오로 헌신하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헌신을 통하여 소명을 주시

1) 리차드 포스터,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송준인 옮김, 두란노서원, 1995), 233.

2) 참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7-19).”

3) 케네스 보아,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268-269.

고 새롭게 하신다.⁴⁾ 따라서 만일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라면 “인간의 모든 노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존중할 만한 것이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 어떤 직업도, 그 어떤 소명도, 너무 비천하고 불품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⁵⁾ “인간의 모든 노동은, 설령 그것이 불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 노동은 찬양, 그것도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찬양이다.”⁶⁾

4. 성직과 직업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경우

필자는 지금까지 인간의 노동과 연관하여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특징, 둘째는 은사로 주어진 인간의 노동은 이 땅에 있는 다양한 직업 이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소명이며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영적 유산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문제는 이와 같은 성경의 풍성한 노동의 은사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성직, 즉 목회직의 수행과 연관하여 그 물질적 기준이 없다. 목회자 생계비에 연관하여 목회자의 급여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야기된다. 교회를 건물과 직제의 형태로 구분하면 작은 교회와 중형, 그리고 대형교회 등으로 분리될 수 있고, 그리고 목회자의 직능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호봉제 형식이나 아니면 개교회의 기준에 따라서 목회비를 지급한다.

목회자 사례비의 경우 교단 별로 그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 사례비는 교회별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 사례비에 따라서 물질적 빈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이중직의 사안에서도 제기되었듯이 목회자에 비하여 교회의 숫자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임지가 없는 목회자에게 성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인 예배처소, 목회자 주거지, 그리고 목회자 생활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현재 대안으로는 목회자 수급의 차원에서 교단과 신학대학에서 인원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경제적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단 별 지원 대책을 간구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교회의 미자립 문제는 전적으로 담임자의 능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사회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목회의 경쟁체제에서 살아남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필자는 위의 경우와 같이 목회자의 생계비 또는 사례비의 문제와 연관된 성직의 수

4) 엘리스터 맥그라스,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232.
 5) 엘리스터 맥그라스,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233.
 6) 엘리스터 맥그라스,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234.

행과 목회자의 경제 문제와 연관하여 바울의 경우를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바울은 선교활동에 있어서 최우선 목표를 복음 전파에 두었으며 그리고 선교와 연관된 목회비나 생계비는 공동체의 상황을 우선 중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활동을 할 때 직접 생계를 위하여 천막을 짜는 기술을 통하여 자급자족하였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한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였다. 바울의 경우를 통하여 성직과 직업, 그리고 사례비의 사이에서 그가 지혜롭게 처신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바울의 천직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처럼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성직 계급에 속하여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로지 복음의 사명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도의 신령한 권위로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9:13).”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사롭게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물질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썩을 것을 구하지 않기 위함이며 복음이 훼방당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한다(고전9:25).

바울의 경우 그는 고린도에서 생업을 위하여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취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바울은 원래 법을 연구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청소년기에 자녀들에게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자급자족하는 교육을 받게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⁷⁾ 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참고 눅2:42).⁸⁾ 칼빈은 바울이 천막 짜는 기술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 이유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며 재정지원을 받게 될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복음을 빙자로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참고 고전9:12, 15).⁹⁾

바울이 천막을 짜는 일에 대하여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사치스러운 고린도 도시에서 천막 짜는 일은 궁색한 일이었지만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¹⁰⁾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직업으로서의 천막을 짜는 일은 실제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죽 옷을

7) Barnes's New Testament Notes.

8) Robert Jamieson(1802-1880),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9) John Calvin(1509-1564), Commentary on Acts, Volume 2.

10) John William McGarvey(1829-1911), Commentary on Acts of the Apostles.

만드는 일, 커튼이나 우산을 만드는 기술과도 연관이 된다.¹¹⁾ 바울이 이러한 일을 기꺼이 감당한 이유는 스스로 경제적인 필요를 충당하고(행20:34), 하나님은 늘 선한 일을 하시기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의심치 않고 믿었으며, 따라서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후9:8-10). 따라서 바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서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다(살전3:8).

바울은 천막 짜는 기술을 통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하게 되는데 기술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들 부부를 칭찬하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서로 돕고 신뢰하는 사이가 된 것을 보게 된다(롬16:3).¹²⁾ 바울이 이와 같이 공동체를 형성한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거처할 곳과 먹을 양식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신앙과 연관이 된다.¹³⁾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같이 일함으로서 얻는 영적인 유익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고, 평등하게 열심히 일함으로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¹⁴⁾ 즉 복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만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심지어 “쉬지말고 기도하라(살전5:17)”라는 바울의 권고 이면에는 당시 대부분의 개종자들의 신분상태가 노예였으며 이들에게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었기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상태에서도 제한받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신앙의 확신을 바울이 저들에게 불어넣어주기 위한 것이다.¹⁵⁾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노동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어서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칭찬한 이유는(롬16:3) 저들이 매사에 신실한 성도였기 때문이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데 서로 필요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감당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¹⁶⁾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경우 성직과 직업사이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바울이 복음의 구령사역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유대인의 교육법에 따라

11) Adam Clarke(1760-1832), Commentary on the Bible.

12) Matthew Henry(1662-1714),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ume VI, Acts to Revelation.

13) Alexander MacLaren(1826-1910), Expositions of Holy Scripture: The Acts.

14) George Thomas Stokes(1843-1898), Expositor's Bible: The Acts of the Apostles, Volume II.

15) George Thomas Stokes(1843-1898), Expositor's Bible: The Acts of the Apostles, Volume II.

16) John Gill (1690-1771), New Exposition of the Entire Bible (modernised by Larry Pierce).

서 가족 공예를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최소한 일인일기(一人一技)를 준비함으로써 어떤 상황에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력을 준비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육체로 감당하는 노동의 보상보다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더 넉넉히 살 수 있는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생계전선에 직접 뛰어 들어가 스스로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오로지 복음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그는 자신의 성직 수행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범이 됨으로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 존경받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5. 결론: 목사직, 성직자의 물질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경우 그의 만인사제설을 보면 신앙의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논점 핵심은 개인에 있기보다는 참된 교회와 올바른 성도의 교제에 있었다. 사실 ‘모든 신앙인은 그 자신의 사제’라는 만인 사제설의 개인주의적인 차원은 ‘모든 신앙인이 그 이웃의 사제’라는 뜻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사제가 아니라 그의 이웃의 사제로서의 사제이다. 따라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제이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고, 성도의 교제로서의 삶인 것이다. 신약 성서의 교회가 성도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였던 것처럼 종교 개혁 또한 기독교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연관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에서 루터는 영적 기독교인과 세속적 기독교인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성직을 이해하였던 중세 교회를 비판하였다. 그는 사제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역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지도자들, 즉 통치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된 신뢰와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하며, 시민을 향해서는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있어야 하고, 보좌관과 관리들에 관해서 자유로운 판단과 이성을 지녀야 하고, 그리고 악행자들에 대해서는 절도 있는 엄정함과 확고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보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관리들은 하나님이 임시로 세우신 질서이다. 마찬가지로 사제의 직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사제나 감독, 그리고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부의 관리가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되시며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주시는 직무를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제는 기독교왕국의 관리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

기 위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루터는 또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루터가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자신의 변화이며 사회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믿음’이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변화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창조적이며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 들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듯이, 믿음과 선행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루터의 입장이었다.¹⁷⁾

필자는 지금까지의 논지를 통하여 목회자의 물질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노동과 연관된 직업은 만인사제설의 관점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각자 고유의 사명이 있으며 기쁨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 성직의 최고 목표는 복음전파에 있는 것이며 물질적 조건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목회자 사례비는 성직을 수행하는 노동의 대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따른 물질의 소유는 자유의 신장이며 성취도와 연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회자에게 사례비의 문제는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별개의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물질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며 사례비의 크기 여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사례비는 성직수행의 노동이나 교회의 재정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영혼 구령은 물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감당되는 것이다.

둘째, 성직으로서의 직업은 바울의 경우와 같이 공동체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서 자신이 필요한 물질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지만 복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기도 또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였다. 이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고 물질적 문제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회철학과 연관이 된다.

목회자의 물질 문제는 교회 자체의 사례비를 책정하기까지의 과정상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교회의 목회자 사례비 때문에 사회적 문제점으로 비화된다는 것은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순수성이 물질적 문제로 훼손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목회자와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할

17) Martin Luther's Definition of Faith: An excerpt from "An Introduction to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 Luther's German Bible of 1522 by Martin Luther, 1483-1546 Translated by Rev. Robert E. Smith from DR. MARTIN LUTHER'S VERMISCHTE DEUTSCHE SCHRIFTEN. Johann K. Irmischer, ed. Vol 63 (Erlangen: Heyder and Zimmer, 1854), 124-125. [EA 63:124-125] August 1994.

것이다.

셋째,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교단 별 호봉제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기준은 자립하지 못한 경우를 염두에 둘 때 한계가 있지만 과도한 사례비라는 누명(?)을 벗기 위하여 일반 사회의 호봉제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본다. 목회 연수, 가족관계, 학력, 교회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며 재무와 회계법 그리고 목회자들이 참여하여 기준표를 만들어서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1. 공(公)과 사(私)

공(公)은 공평할 公으로 여러 사람에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와 관련됨 의미하며, 사(私)는 사사로울 私로 개인에 관련됨을 의미한다. 공적이란 의미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련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사적영역과 엄격히 구별할 필요가 발생한다.

공동체차원의 역할 수행도 실제적으로 개인이 공동체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개인차원에서의 역할인지 공적인 공동체 차원에서의 역할인지 의견상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발생한다. 개인 차원에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지출이 세금부담이라는 공공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용 비용과 사적인 가사비용을 엄격히 구분한다.

개인적인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 공공성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첫째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며, 둘째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지기 직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단 또는 노회차원에서 부교역자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목회자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지역교회가 감당해야할 몫인 현실이기에 교회는 목회자들이 생활에 걱정하지 않도록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목회자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목회활동에 전념한다면 교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목회자 처우제공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목회자가 생활고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지켜야할 공사구분을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발생 한다.

2. 비용 부담 주체

비용은 비용 지출로 효과를 얻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교회가 부담하고, 개인을 위하여 지출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관련된 사람이 교회의 일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하 ‘활동비’라 함)은 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이 교회를 위하여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여 본인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3. 교회 비용 정산과 사례비 지급

교회가 목회자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교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출하는 금액도 있고, 이와는 별도로 목회자 생활비 명목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금액도 있다. 전자와 후자는 모두 교회의 비용이지만, 전자는 교회의 일반 기능 수행비용이므로 교회 역할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후자는 목회자 처우 차원에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므로 그 사용처에 대해 교회가 개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논리적으로 교회 역할 수행비용과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례비는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부담할 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금액과 개인 생활비 차원에서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4. 활동비와 사례비

활동비는 교회 역할 수행과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공동체적 지출이면 교회 사역 수행과의 관련성으로 활동비이지만 특정인에게 귀속되며, 사용용도를 교회가 묻지 않는다면 이는 사례비에 해당한다.

활동비와 사례비 구분 기준은 지급하는 명목(명칭)이 아니라 지급하는 항목의 속성이 무엇인가로 구분해야 한다.

활동비와 사례비의 구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열거할 수 있겠다.

(1) 정액(定額)지급과 실비정산(實費精算)

a. 실비정산

사역 수행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정산하여 교회가 지급하는 경우는 교회를 위하여 개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원천적인 비용 부담 주체인 교회가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활동비에 해당한다.

b. 정액 지급

실제 지출한 영수증에 근거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 없이 지출하거나 실제 발생액과 무관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교회가 그 사용 내역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포괄적 용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① 목회자가 영수증 챙기는 수고와 시간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②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영수증 챙기는 수고와 시간

교회 재정 관리는 목회자 또는 재정관리 부서 담당자의 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적 관리책임에 근거하며, 이는 공동의회에 보고하는 차원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지출한 내역에 관하여 파악하지도 않고 못하고 포괄적 용도로만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사람이 지출내역의 적정성을 임의로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관리책임유기다.

가끔은 목회자들이 정액으로 수령한 금액에 개인적인 사비(私費)를 보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고 항변하지만 교회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은 교회의 지출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지출에 해당하며, 교회의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 사비를 포함한 초과 지출이 의미 있으려면 초과 지출한 금액이 교회의 수입으로 잡히고, 전체적 관점에서 해당 지출항목에의 지출이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지출이라는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할 때만 의미가 있다.

받은 정액과 지출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얼마를 교회로부터 수령하였고 얼마를 지출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가 없다. 본인이 초과 지출한 경우와 반대로 받은 금액보다 적게 지출한 경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적게 지출했다는 사실조차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대로 지급받은 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결과라며 이는 교회의 공금,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재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일반 기업에서 영수증은 종이쪽지가 아니라 현금과 동일시된다. 업무상 전도금을 미리 받아 비용을 집행한 담당자가 만약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족한 영수증 해당액을 담당자가 변상해야 한다.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이 없으면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뿐더러 해당액을 대표자가 상여(賞與)로 가져갔다고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 시킨다. 예전에 영수증 없이 지출이 용인되는 기밀비 항목은 이

미 수십 년 전에 사라졌다.

그래서 기업은 실비정산을 경비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하며, 실비정산이 어려운 차량 운행비 경우도 목적별 주행거리단위당 여비를 정한 규정에 근거해 교통비를 지급하고, 여비규정에서는 항목별 한도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영수증을 받지 못할 상황

목회 활동과정에서 구제비를 지급하거나 경조사비 지급 경우 등 비용 지출과정에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구매처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교회 경비지출시 일반 기업 지출과는 달리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부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증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자금을 지급하는 성격에 대한 설명
-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기술
- 자금을 수령하여 전달한 사람의 수령 확인
- 지출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로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상급자의 확인

정액지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목회활동비, 목회도서비, 심방비 등을 들 수 있다.

상기의 요건 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영수증 없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교회 공동체가 청지기로서의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2) 일반적 규정 적용과 특정인 귀속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에 근거한 비용 지출은 교회의 활동비가 되지만 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경우라면 이는 특정인에 대한 사례비로 보아야 한다.

목회자와 사무원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사례비가 아니지만, 담임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장학금이 아니라 사례비에 해당한다. 또한, 목회자(또는 사무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설사 항목을 장학금으로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사역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례비에 해당한다.

(3) 사역과의 관련성

실비정산이라고 모두 활동비인 것은 아니며, 사례비가 아니라 활동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회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려면 해당 지출은 반드시 교회 사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가 사역과정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비용을 교회가 지불하는 것은 활동비이지만 목회자가 가정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비를 교회가 부담한다면 이는 사례비에 해당한다.

목회자가 주일 강단 설교에 필요한 가운을 세탁하는 비용은 일반 기업에서 착용하는 제복 관리비용과 같은 성격으로 활동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의류 세탁비용이 예배시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하는 의류 세탁비용이라면 사례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제복은 해당업무 종사 시간에만 착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비용, 운동 기구구입비, 목회자 개인 종친회비 등은 목회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사례비에 해당한다.

5. 교회의 특수성과 일반 사회

많은 경우 교회는 일반 사회와 다르다는 특수성을 얘기 하지만 이는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사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 엄격한 기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반 사회는 주주가 임원의 경제적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있고, 총회가 비영리단체 임원의 경제적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지만 교회는 공동의회 결정만으로 교회의 경제적 관리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보다 더 엄격한 특수성이 적용되는 것이며, 완화된 특수성을 적용하려는 것은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관점이 아니다.

6. 나가는 글

목회자 처우를 교회가 부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례비가 아닌 것처럼 애매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교회의 재정 관리는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에게서조차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목회자 처우를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일반적 상식을 초월한 지출이 문제다. 목회자 배려차원에서 발생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관리책임을 특정인들이 임의적으로 면탈시키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교회 사례 조사 발표

조기성 국장(기독교경영연구원)

사례발표

기독교경영연구원
사무국장 조기성

청주제일교회

향린교회

예인교회

10개 교회선정

7개 교회 질의서 답변

두레교회

마중물교회

높은뜻하늘교회

질의서 내용 : 10가지 질문

1. 목회자 사례 관련 질문 2가지

- 1) 사례 기준 : 연봉제 혹은 호봉제 등
- 2) 참고 기준 유무

2. 목회 활동비 관련 질문 7가지

- 3) 목회 활동비 유무
- 4) 목회 활동비 별도 책정 유무
- 5) 지급 범위 : 담임 목회자 혹은 그외
- 6) 금액 차이 여부
- 7) 책정 시 참고 기준 여부
- 8) 사용처
- 9) 실비 정산 시행 여부
- 10) 공개 여부

연봉제

연봉제+호봉제-2개 교회

1. 사례비 기준

호봉제-2개 교회

전체 예산 대비 30%

총회 직원 급여 기준

공무원 기준-3개

2. 참고기준 여부

교원기준 70%

없다-나름의 원칙

있다-5개 교회

3. 목회활동비 유무

없다-실비지급

없다

별도책정-5개 교회

4. 별도책정 여부

구분 책정

- 사례비 포함 항목
- 교회예산 포함 항목

없다

5,6. 지급 범위 및 차등 여부

모두 지급-차등 지급 : 5개 교회

6개 교회 모두 없다

7. 책정시 참고 기준

교단 소속교회 참고 교회 규모 및 교인 수

지난 수년간 내역과 금액 참고

통신비

심방비

교통비(주유비)

8. 활동비 사용처

1회성 후원(상조비)

도서구입비

접대비

실비 정산(4개 교회) : 법인카드 및 영수증 증빙

9. 실비정산 시행 여부

아니오-2개 교회

공개

홈페이지 공개

전체금액만 공개-개별요청시 공개

10. 활동비 공개 여부

제직회 및 공동의회 정기적 공개-3개

사례조사 총평

교단별 표준 기준안 제시
사용처에 대한 계정 가이드
지속적인 회계 집행 실무자 교육

■ 질의 및 응답

■ 단 체 소 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문의

전화 02-741-2793

홈페이지 www.cfan.or.kr

팩스 02-741-2794

전자우편 cfan05@hanmail.net

■ 목적(사명)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 운동전략 및 실행계획

- 1. 연구와 개발** 성경적 교회재정관 정립,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모범사례 발굴, 대안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2. 배포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재정사용 원칙제시, 재정정관 및 조례 보급, 재정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보급,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담당자 교육
- 3. 교회현장 운동** 목회자납세 운동, 재정결산서공개 운동
- 4. 교육과 컨설팅**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재정문제 상담, 건강한 역할모델 육성

■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

- 주소_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0 영남빌딩 205호
- 전화_02-741-2793 ·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 팩스_02-741-2794 · 우편주소_protest@protest2002.org

기독교경영연구원

- 주소_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8 신원빌딩 1층
- 전화_02-718-3256 · 홈페이지_www.kocam.org
- 팩스_02-718-3528 · 우편주소_kocam@kocam.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대로54길 30, 401호
- 전화_02-794-6200 · 홈페이지_www.cemk.org
- 팩스_02-790-8585 · 우편주소_cemk@hanmail.net

바른교회 아카데미

- 주소_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 전화_02-777-1333 ·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 팩스_02-319-1103 · 우편주소_gcacademy@hanmail.net

재단법인 한빛누리

- 주소_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8길 17 2층 (재)한빛누리
- 전화_02-924-0240 · 홈페이지_www.thebrightfoundation.org
- 팩스_02-924-0243 · 우편주소_thebrightfd@gmail.com